

삼성라이온즈 응원가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 판단 사건

(2021.10.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985 판결, 확정)



법제지원부 김지수

주요 쟁점 가사가 있는 노래의 공동저작물 해당 여부 및 동일성유지권 등 침해 여부

판시사항 (공동저작물 해당 여부) 가사가 있는 노래는 가사 부분과 악곡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 악곡의 경우 변형 수준이 크지 않아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의 경우 원곡 가사와 전혀 일치하지 않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피고가 가사가 있는 노래의 악곡 부분을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작곡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함.

시사점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음악저작물은 악곡과 가사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결합저작물임을 확인하면서, 가사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악곡에 대해서까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지만, 야구장에서 공연하는 것이 성명을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될수 없다고 보았음.

심급	1심 (원심)	2심 (항소심, 확정)
당사자	원고 : 응원가로 이용된 음악저작물의 작곡가, 작사가 피고 : 주식회사 삼성 라이온즈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16867	2019나2016985
선고일자	2019.2.18.	2021.10.21.
판결결과	원고 패소	원고 청구 일부 인용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제13조, 제22조	

사건의 경과

프로야구 구단의 응원가는 대중가요 또는 외국곡의 멜로디에 응원 가사를 붙인 경우가 많았음. 각 구단들은 대중가요 이용에 따른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 왔으나, 저작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었음.

이에 응원가로 사용된 원곡의 작곡가와 작사가들이 프로야구 구단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각 구단은 응원가를 변경하거나 창작곡으로 바꾸는 등의 대응을 하였으나, 그 중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에 대하여 원곡 작곡가·작사가들이 공동소송을 진행함.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 ☐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는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저작물의 요건으로 ‘분리 이용 불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음.**
- ☐ 동일성유지권은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음악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더라도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고 분량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5.4.9. 선고 2011다101148¹⁾ 판결 인용)
- ☐ 원저작물을 토대로 이에 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여 실질적인 개변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음.

2.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성격

- ☐ 재판부는 악곡과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의 경우 악곡만을 공연하거나 가사만을 출판하는 등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아(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다58460²⁾ 판결 인용) 악곡과 가사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작곡가와 작사가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

1) 음악 미리듣기(30초~1분) 서비스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로, 음악저작물 중 미리듣기 서비스에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어 미리듣기 서비스로 인하여 음악저작물에 표현된 원고의 사상이나 감정이 왜곡되거나 내용 또는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으므로 재판부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음.

2) 보아의 ‘넘버원’ 작사가가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를 상대로 “노래의 작사 저작권료”를 달라며 낸 저작자확인소송의 상고심. ‘넘버원’은 원곡은 작곡가 ‘지기’가 만든 외국곡이고, 편곡자들이 편곡을 거쳐 작사가가 가사를 붙인 노래인데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는 이 곡의 작사, 작곡자를 지기로 표시하였음. 재판부는 이 곡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작사가 또한 저작권자에 해당하며 작사가에게 저작권료와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음.

3. 이 사건 응원가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 재판부는 이 사건 응원가 가사의 경우 원곡 가사 중 창작성이 있는 기존의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가사에 해당하여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곡 작사가의 동일성유지권이나 성명표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4. 이 사건 응원가의 악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 재판부는 이 사건 응원가와 원곡의 악곡 부분을 각각 비교하면서 이 사건 응원가가 야구장 관객들이 원곡과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응원가의 악곡 부분이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침해될 정도로 원곡에 비교하여 변형되거나 개변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성명표시권의 경우 피고가 야구장 정규시즌 중 피고의 홈구장 전광판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전광판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거나, 야구 경기가 종료되고 난 후 해당 경기에서 사용되었던 응원가 저작자의 성명을 전광판에 한꺼번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등 얼마든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아 피고의 성명표시권 침해 책임을 인정함.

5. 결론

- 재판부는 피고의 작곡가들에 대한 성명표시권 침해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작사가들의 경우 피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

시사점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음악저작물은 악곡과 가사로 분리가 가능한 결합저작물임을 확인하면서, 결합저작물이기 때문에 가사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악곡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음. 또한 응원가 가사가 기존 가사를 일부 변경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가사로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가사에 대해서도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다만 성명표시권의 경우 야구장에서 공연하는 것이 성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침해를 인정했는데, 이 또한 야구장에서 응원가로 사용된 악곡의 저작자에 한하여 인정하였음. 이를 통하여 음악저작물은 분리 가능한 결합저작물이기 때문에 악곡만 이용하거나 가사만 이용할 때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대상(악곡, 가사)의 저작자에 대해서만 허락을 받아도 충분한 것을 알 수 있음.

※ 본지의 의견은 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